

『大明律直解』의 조사 ‘果’와 『六祖法寶壇經諺解』의 조사 ‘와/과’의 의미에 대한 비교 연구*

박 철 주
(서강대학교)

Park, CheolJu.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Postposition ‘果[gwa]’ in *Daemyeongnyuljikhae* and Postposition ‘와[wa]/과[gwa]’ in *Yukjobeopbodangyeongeonha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165-186. Usage about postposition ‘果[gwa]’ with usage postposition ‘와[wa]/과[gwa]’ in “六祖法寶壇經諺解[yukjobeopbodangyeongeonhae]” is some different to “大明律直解[daemyeongnyuljikhae]”.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the kind of analysis that we can give to these usag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bout relationship of meaning with ‘果[gwa]’ in “大明律直解[daemyeongnyuljikhae]” and ‘와[wa]/과[gwa]’ in “六祖法寶壇經諺解[yukjobeopbodangyeongeonhae]”. So far, very little has been done in this direction. Relationship of meaning with ‘果[gwa]’ and ‘와[wa]/과[gwa]’ have not, so far, been noticed, nor have they been studied in detail. S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difference of meaning of postposition ‘果[gwa]’ in “大明律直解[daemyeongnyuljikhae]” and ‘와[wa]/과[gwa]’ in “六祖法寶壇經諺解[yukjobeopbodangyeongeonhae]”. However, this present paper was limited in “大明律直解[daemyeongnyuljikhae]” and “六祖法寶壇經諺解[yukjobeopbodangyeongeonhae]”. Therefore, results of this study leave more to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y inaccuracies which remain are, of course, my own.

주제어 (Key Word): 大明律直解[daemyeongnyuljikhae], 六祖法寶壇經諺解[yukjobeopbodangyeongeonhae], 果[gwa], 와[wa]/과[gwa], postposition, the medieval Korean, meaning

*본 논문은 2007년 5월 19일 제43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다듬은 것이다. 그간 필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손을 보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내게 되어 학회에서 필자의 출고에 대해 토론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허재영(현 단국대) 선생님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허재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익명의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의 귀중한 조언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논의의 문제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1. 머리말

『大明律直解』¹⁾에서 보이는 ‘果’는 열거적 접속조사인 ‘와/과’에 대한 이두이다. 그런데 이 ‘果’가 쓰인 구문에 있어서 문형상 ‘果’의 의미가 현대국어에서의 ‘와/과’와는 다른 면이 있음을 줄고(2006ㄱ)에서 밝힌 바 있다. 즉, 현대국어에서 ‘와/과’는 오직 ‘and’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에 비해 『大明律直解』에서의 ‘果’는 ‘and’의 의미 외에 ‘or’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은 매우 분별적이었다.²⁾ 하지만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果’에 대한 용법만으로 그 당시의 국어가 그러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果’의 통사적 특징이 그 자료에 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그러한 통사적 용법이 있었음은 증명한다 할 것이다. 『大明律直解』가 30권에 달하며 여러 편역자에 의해 편찬된 자료이므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통사적 용법을 그 당시의 국어 용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의 ‘果’의 용법을 그 당시 국어에 있었던 하나의 용법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14세기 말엽에 있었던 통사적 용법으로 본다면 이러한 용법의 통시적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언어는 짧은 기간 안에 변화하지 않으므로 이의 통시적 변화는 1세기를 단위로 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1395년에 간행된 『

1) 『大明律直解』에 대한 연구는 박희숙(1984), 고정희(1992), 한상인(1993), 김두황(1994), 박성중(1996), 박철주(2003, 2005, 2006ㄱ, 2006ㄴ, 2006ㄷ, 2006ㄹ, 2006ㅂ)를 참조.

2) 『大明律直解』에서 ‘果’가 ‘or’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하나의 구문 내에 ‘果’가 연속적으로 쓰이고 구문의 내용이 어떠한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때이다. 반면 열거된 명사 구성요소를 내에서 ‘果’가 한 번만 쓰였을 경우에는 ‘and’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다만 ‘果’가 연속으로 사용된 ‘A果 B果… -果 等’의 문형이더라도 그 내용이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or’의 의미가 아닌 ‘and’의 의미가 된다. 한편 ‘果’가 구문 내에서 한 번만 쓰인 ‘-果 -亦’ 문형에서 구문의 내용이 공동 행위나 공동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and’가 아닌 ‘or’의 의미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果 -乙’의 문형도 비록 ‘果’가 한 번만 쓰였지만 구문의 내용이 처벌될 범죄 행위의 나열이면 ‘果’는 ‘and’의 의미가 되지 않고 ‘or’의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A果 B果… -亦’ 문형과 ‘A果 B果… -果乙’ 문형에서는 항상 ‘or’의 의미가 되었다. 그런데 ‘-果 -乙’의 문형에서는 ‘and’의 의미이던 ‘果’가 ‘-果 -果乙’의 문형에서는 ‘or’의 의미로 바뀌므로 이것은 다른 조사와 더불어 쓰인 ‘果’가 나머지 다른 ‘果’를 ‘or’의 의미로 풀이토록 하는 표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표지 역할은 속격조사 ‘矣’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矣 -果’ 문형에서의 ‘果’는 모두 예외 없이 ‘or’의 의미를 가지지만 속격이 생략된 채 ‘果’만 쓰인 구문에서는 ‘果’가 모두 ‘and’의 의미가 된다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처럼 『大明律直解』에서의 ‘果’는 현대국어의 ‘와/과’와는 다른 용법으로써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2006ㄱ)를 참조할 것.

『大明律直解』로부터 100년 후에 간행된 자료에서 ‘와/과’의 용법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두는 『大明律直解』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므로 15세기 말엽에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이므로 우리말에 대해서 이두보다는 훈민정음에 따른 표기가 그 당시의 국어에 대하여 더 현실적인 기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두 자료보다는 훈민정음에 의한 언해본을 『大明律直解』에 대한 비교 자료로 삼기로 한다. 『大明律直解(1395)』로부터 1세기 이후의 언해 자료로는 『六祖法寶壇經諺解(1496)』, 『眞言勸供(1496)』, 『三壇施食文(眞言勸供과 합본, 1496)』, 『神仙太乙紫金丹(1497)』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조선조 연산군 2년경에 간행된 『六祖法寶壇經諺解』로서 이 자료는 ‘上·中·下’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下’권은 명종 6년(1551)의 복간본이므로 보다 이후의 국어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六祖法寶壇經諺解』의 ‘上·中·下’를 『大明律直解』의 ‘果’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로 삼는다.³⁾

『大明律直解』에서 ‘果’의 용법에 의한 의미들은 현대국어에서의 ‘와/과’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법상의 차이에 따른 의미 변화가 『大明律直解』의 간행 이후 1세기 뒤에도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나아가 현대국어에서의 ‘와/과’처럼 접속조사가 항상 ‘and’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15세기 말에 이미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大明律直解』에서처럼 ‘or’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는지도 본 연구에 의해 확인이 될 것이다.

2. 열거격 조사 ‘果’와 ‘와/과’의 문형상 의미 차이

2.1 ‘-果 -亦’ 문형과 ‘-와/과 -이’ 문형

접속조사가 쓰인 구문 중에서 우리는 ‘-접속조사 -주격조사’의 문형을 가장 기본적인 문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형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도 볼 수 있는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이의 문형이 ‘-果 -亦’의

3) 물론 『大明律直解』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로서 『六祖法寶壇經諺解』 외에 여러 자료도 함께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이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부득이 『六祖法寶壇經諺解(上·中·下)』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다. 『六祖法寶壇經諺解』 자료 의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한다.

로 나타난다. 아래의 예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문형을 가진 구문이 된다.⁴⁾

- (1) 가. 叔果 姪果亦 各處 生長爲 相知 不得 爲如乎等用良(1:39a)
 (삼촌과 조카가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 자라서 서로 알지 못하였는데)
- 나. 凡 闕內 宿衛人員果 及 金城門 守衛人亦 入直 當次爲去乙 入直 不冬 爲在乙良 答四十齊(13:2b)
 (무릇 궁궐 내에서 숙직하는 인원과 금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차례대로 번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을 서지 아니 한 경우에는 태 40대를 치며)

위 (1)의 구문은 공통된 상황이 내용으로 오고 있다. 즉, ‘叔’과 ‘姪’ 그리고 ‘宿衛人員’과 ‘守衛人’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구문에서의 접속조사 ‘果’는 ‘and’의 의미로 풀이가 이루어진다. 이는 ‘叔’과 ‘姪’은 성장한 상황이, ‘宿衛人員’과 ‘守衛人’은 차례대로 번을 서야 하는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의 구문에서 보이는 상황은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구문에서의 접속조사 ‘果’는 ‘and’의 의미로 해석해야 구문이 옳게 풀이된다. 그러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접속조사 -주격조사’의 문형으로서 구문의 내용이 동일 상황일 경우 접속조사 ‘果’는 ‘and’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1)에서와 같은 ‘-접속조사 -주격조사’의 문형을 가진 구문들로서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 쓰인 구문의 모두이다.

- (2) 가. 비를 내리면 城邑(성읍)과 聚落(취락)이[聚落(취락)은 尺舍利라]다 떠 홀로디(上 64a)
- 나. 三世諸佛(삼세제불)와 十二部經(십이부경)이 사라미 性中(성중)에 이셔(上 71b~72a)
- 다. 眼耳(안식)와 色聲(식성)이 그 뼈 곧 호야디리라(中 13a)
- 라. 모든 色象(식상)과 一一音聲相(일일음성상)이 平等(평등)호야(中 93a)
- 마. 沙門(사문)은 三千威儀(삼천위의)와 八萬細行(팔만세형)이 긋 거시니(中 100b)

4) 본고에서 보이는 『大明律直解』의 구문들은 졸고(2006ㄱ)에서 다룬 것이다.

‘-와/과 -이’의 문형을 가진 (2)의 구문들 역시 (1)과 동일하게 구문에 어떤 공통된 상황이 오고 있다. 즉, (2가)의 경우 ‘城邑’과 ‘聚落’은 물에 떠내려간다는 공통된 상황에 놓여 있고, (2나)는 ‘三世諸佛’과 ‘十二部經’이 사람의 성품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공통된 상황을 말하고 있다. (2다)의 경우도 헐어지는 것은 ‘眼·耳·色·聲’이므로 이들은 공통된 상황에 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2라)는 평등한 것은 ‘色象’과 ‘音聲相’이므로 이들 역시 같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2마)는 갖추어야 할 것이 ‘三千威儀’와 ‘八萬細行’이므로 이들은 갖추는 상황에 있어 공통적이다. 따라서 (2)에서 쓰인 접속조사 ‘와/과’는 (1)의 경우에서처럼 ‘and’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접속조사 -주격조사’의 문형이면서 구문의 내용에 어떤 공통된 상황이 설정된 경우에는 접속조사가 ‘and’의 의미를 가진다는⁵⁾ 『大明律直解』에서의 용법이 『六祖法寶壇經諺解』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2. 2 ‘-果 -乙’ 문형과 ‘-와/과 -을’ 문형

우리는 ‘2. 1’에서 접속조사 다음에 주격조사가 오는 구문을 살펴보았다.

5) (1)과 (2)의 구문은 접속조사의 선행 명사를 ‘A’, 후행 명사를 ‘B’, 접속조사를 ‘+’, 동사구를 ‘C’로 한다면 이들 구문의 의미에 대한 공식은 ‘A=C, B=C, A+B=C’가 된다. 이러한 공식은 접속조사가 ‘and’의 의미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공식은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 접속조사 구문은 현대국어는 물론 『大明律直解』와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大明律直解』에서는 ‘-果 -亦’의 문형이지만 접속조사 ‘果’가 ‘and’의 의미가 아닌 ‘or’의 의미인 경우도 있다.

- (i) 八十 以上**果** 十歲 以下 及 廢疾爲在 人**亦** 反逆殺人罪乙 犯爲(1:22a)
(80세 이상**이**거나 10세 이하 및 질병에 걸린 사람**의** 반역죄나 살인죄를 범하여)
- (ii) 有官職人**果** 軍民之家**亦** 妻 及 女子 等乙 各 寺社神廟良中 發送 燒香爲在乙 良(11:3b)
(관직에 있는 사람 **또는** 군인·민간의 가정**의** 아내 및 여자 등을 각 불사·도관·신묘에 보내어 향을 사르게 한 경우는)
- (iii) 家長 及 家長矣 期親**果** 外祖父母**亦** 備役人乙 毆打爲乎矣(20:10b)
(가장 및 가장의 기복친 **또는** 외조부모**가** 용역인을 구타하되)
- (iv) 伯叔父**果** 父之姊妹**亦** 姪果 姪孫果乙 毆殺爲弥(20:13b)
(백·숙부 **또는** 고모**가** 조카나 종손을 타살하며)

위의 구문에 쓰인 접속조사 ‘果’는 줄고(2006ㄱ)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들 구문에는 어떤 공통된 상황이나 공동으로 하는 행위가 주어지지 않아 ‘and’의 의미가 아닌 ‘or’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六祖法寶壇經諺解』의 접속조사 구문 중에는 이와 같은 경우로 쓰인 구문은 없다.

이번에는 주격조사 대신 목적격조사가 오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大明律直解』에서 이에 해당하는 문형은 ‘-果 -乙’로서 이의 문형을 가진 구문은 다음과 같다.

- (3) 가. 奉王旨 推問爲在 人乙良 所犯罪狀果 應議之狀乙 開座爲(1:8a)
 (왕지를 받들어 추문한 사람은 범죄한 바의 상황과 범죄자가 응의자 신분_을에 있는 상태임_을 기록하여)
- 나. 凡 上前 對製文書果 申聞狀上 等 事乙 眞實以 使內 不冬 詐僞爲在 乙良(24:2b)
 (무릇 임금 앞에 대제문서와 주문과 상소 등의 일_을 진실 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인 경우에는)
- 다. 所損財物果 所費功錢 數爻乙 計爲 重者是去等(29:2b)
 (손해를 입힌 재물과 허비한 공진의 수효를 계산하여 중한 자_이거 든)

이들 구문은 어떤 행위에 있어 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거된 내용들 전부는 행함에 있어 대상이 된다. 따라서 (3)에서는 접속조사 ‘果’는 ‘and’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의 문형을 가진 구문들이 있다.

- (4) 가. 議論(의론)하고 禪定(선정)과 解脫(해탈)_을 論(론)티 아니히시더라(上 42b~43a)
- 나. 煩惱(번노)ㅣ 더느니 邪(샤)와 正(정)_을 다 쓰디 아니히면(上 79a)
- 다. 惠能(혜능)은 諸人(제인)과 西方(서방)_을 刹那(찰나)스 스시에 옮겨(上 95b)
- 라. 懺悔(참회)리오 善知識(선디식)과 四弘誓願(스홍세원)_을 發(발)호리니(中 27a)
- 마. 師(스)ㅣ 니르샤디 明(명)과 無明(무명)_을 凡夫(범부)는 둘해 보거든(下 36b)

우리는 (4)의 구문에서도 열거된 것들은 어떤 행위에 있어 모두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4)에서의 ‘와/과’도 ‘and’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大明律直解』와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접속

조사 -목적격조사’의 문형의 경우 접속조사의 의미를 공통되게 ‘and’로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인다.⁷⁾

2. 3 ‘A果 B果… -亦’ 문형과 ‘A와/과 B와/과… -이’ 문형

우리는 ‘2. 1’에서 접속조사와 주격조사가 각각 한 번씩 쓰인 구문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접속조사의 구문 중에는 접속조사가 두 번 이상 쓰인 구문이 있다. 아래에서 보이는 예문은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지는 구문들로서 이들 구문에는 ‘果’가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쓰이고 있다.

(5) 가. 四品五品官矣 父母**果** 妻**果** 子孫**果** 門蔭承襲良中 進叱有在 子孫**果** **亦** 犯罪爲去等 (1:11b)

(4품·5품관의 부모 **또는** 아내**이거나** 자손 **또는** 음직을 받은 자손**의** 범죄하거든)

나. 嫡母**果** 繼母**果** 養母**果** 親母**果** 亦 父乙 殺害爲弼(22:9b~10a)
(큰어머니 **또는** 의붓어머니 **또는** 양어머니 **또는** 친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며)

다. 凡 居父母喪**果** 夫喪**果** 僧尼道士女冠 等**亦** 犯奸爲在乙良(25:4b)
(무릇 아버지나 어머니의 초상 중에 있는 자**이거나** 남편의 초상 중에 있는 여자 **또는** 승려·여승·도사·무당 등**의** 간통죄를 범한 경우에는)

라. 宮闕乙 守衛人**果** 倉庫 看直人**果** 囚人 主掌人 等**亦** 失火爲臥乎 所乙 見遣(26:4a)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거나** 창고를 지키는 사람 **또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 등**의** 불이 난 것을 보고)

7) 『大明律直解』에서는 비록 ‘-果 -乙’ 문형이더라도 구문에 처벌될 범죄 행위의 유형이 나열될 경우에 ‘果’는 ‘and’가 아닌 ‘or’의 의미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2006ㄱ) 참고.

(i) 造畜蠱毒 人**果** 一家內 三人乙 殺害爲在 人 等亦(1:16b)

(별래의 독을 지어 비축한 사람**이거나** 한 가족 내 세 사람**을** 살해한 사람 등)

(ii) 姪亦 三寸 伯叔父母**果** 父之姊妹乙 犯打爲弼(20:13a)

(조카가 삼촌인 백숙부모 **또는** 고모를 구타하며)

(iii) 之次官員**果** 郎廳官員乙 罵詈爲在乙良(21:1b)

(보좌관 **또는** 낭청관원**을** 꾸짖고 욕한 경우에는)

(iv) 須只 造作爲乎 事**果** 須只 破壞爲乎 事乙 預備分別 不冬 爲有可如 (29:2a)

(모름지기 영조하는 일 **또는** 모름지기 파괴하는 일**을** 예비와 분별없이 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구문은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쓰일 수 없으므로 ‘-와/과 -을’의 문형에서 접속조사가 ‘or’의 의미로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나열된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5)의 구문은 나열되는 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범죄 행위에 관련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구문에서의 ‘果’는 ‘and’의 의미가 아니라 ‘or’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졸고 (2006-7)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주어가 오는 구문으로서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도 이처럼 접속조사가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 접속조사 ‘와/과’가 ‘or’의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예문도 (5)와 마찬가지로 나열된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구문이다.

- (6) 가. 날굽 寸(촌)이오 머리와 꼬리와 썬와 발외 다 ㄴ즈니(上 序23a)
 나. 座(좌)에 오르실 제 刺史官僚三十餘人(즈스관료삼십여인)과 儒宗學士三十餘人(유종혹스삼십여인)과 僧尼道俗一千餘人(승니도속일천여인)과 𣪵씩 저습고(上 1b~2a)
 다. 日月星宿(일월성슈)와 山河大地(산하대디)와 泉源溪澗(천원계간)과 草木叢林(초목총림)과 惡人善人(악인선인)과 惡法善法(악법선법)과 天堂地獄(턴당디옥)과 一切大海(일체대히)와 須彌山(슈미산)이 다 虛空中(허공둥)에 잇느니(上 52b)
 라. 善知識(선디식)아 一切修多羅(일체슈다라)와 또 여러 文字(문즈)와 大小二乘(대소이승)과 十二部經(십이부경)이 다 사르들 因(인)하야 두며(上 68a)
 마. 제 色身(식신)이 이 城(성)이오 眼(안)과 耳(시)와 鼻(비)와 舌(설)외 이 門(문)이니(上 96a)
 바. 眼(안)과 耳(시)와 鼻(비)와 舌(설)외 能(능)히 念(념)하논디 아니니라(中 13a)
 사. 內六門(니륙문)은 眼(안)과 耳(시)와 鼻(비)와 舌(설)와 身(신)과 意(의)외 이라(下 43a)
 아. 界(계)는 이 十八界(십팔계)니 六塵(륙딘)과 六門(육문)과 六識(륙식)과 이라(下 43b)
 자. 今賢劫(금현겁)에 拘留孫佛(구류손불)와 拘那含牟尼佛(구나함모니불)와 迦葉佛(가섭불)와 釋迦文佛(석가문불)외 이 七佛(칠불)이시니(下 68b)
 차. 十一月(십일월)에 廣(광)과 昭(쇼)와 新(신)과 세 ㄴ을 官僚(관료)와 또 門人緇(문인척)와 白(백)과 眞身(진신)을 ㄷ토아 만즈 오려 호디(下 82a)

위 (6)의 구문은 접속조사 ‘와/과’를 (5)에서의 ‘果’와 같이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문에는 나열된 것 중에서 일부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고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6가), (6다), (6라)에서는 ‘모두’라는 의미의 부사 ‘다’를 씌으로써 나열된 대상이 전부 해당됨을 말하고, (6나)도 역시 ‘한꺼번에 같이’라는 의미의 부사 ‘흔뻑’을 써서 열거된 것들이 모두 해당됨을 말하고 있다. (6마), (6사), (6아), (6자)는 ‘~가 ~이다’의 문형이므로 나열된 것들은 모두가 해당된다. 그리고 (6바)는 ‘~가 ~이다’의 부정형이므로 역시 나열된 것은 모두 해당된다. (6차)는 ‘드토다’가 쓰였으므로 열거된 자들 모두가 서로 다룬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들 중 몇몇은 다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처럼 (6)에서의 ‘와/과’는 내용상 모두 ‘and’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A果 B果… -亦’의 문형일 경우 『大明律直解』에서는 ‘果’가 ‘or’의 의미가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2. 4 ‘A果 B果… -果乙’ 문형과 ‘A와/과 B와/과… -을’ 문형

우리는 ‘2. 3’에서 『大明律直解』의 경우 ‘果’가 연속으로 쓰였을 때는 ‘果’의 의미가 ‘or’이었지만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와/과’가 연속으로 쓰여도 여전히 ‘and’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접속조사가 연속으로 쓰이되 구문에 주격조사가 아닌 목적격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7)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A果 B果… -果乙’ 문형의 구문들로서 이들 구문에서의 ‘果’는 줄고(2006ㄱ)에서 밝혔듯이 모두 ‘or’의 의미를 가진다.

- (7) 가. 祖父母**果** 父母**果** 夫矣 祖父母**果** 父母**果**乙 訴告爲誅(1:5b)
 (조부모 이거나 부모 또는 남편의 조부모 이거나 부모를 고소하며)
 나. 親族妻**果** 母矣 甥矣 妻**果** 妹子矣 妻**果**乙 交嫁爲在乙良(6:6a)
 (친족의 아내 이거나 외삼촌의 아내 또는 생질의 아내를 취한 것은)
 다. 凡 祖父母父母 及 期親尊長 外祖父母**果** 夫**果** 夫之祖父母父母**果**乙 謀殺爲乎矣(19:2a~2b)
 (무릇 조부모나 부모 및 기복친인 손위 어른이나 외조부모 또는 남편 또는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하려고 음모하되)
 라. 兄**果** 姊**果** 伯叔**果**乙 犯打爲在乙良(20:3b)
 (형 또는 누이 또는 백·숙부를 구타한 것은)

서술에 있어서 내용이 되는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 (7)의 구문은 나열된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주어지므로 ‘果’는 ‘and’가 아닌 ‘or’의 의미가 된다. 그런데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도 (7)과 같은 문형이 쓰였다. 다만 목적격조사가 접속조사와 더불어 쓰이지 않고 홀로 쓰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六祖法寶壇經諺解』의 ‘A와/과 B와/과… -을’ 문형에서는 비록 (7)과 마찬가지로 서술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접속조사는 ‘or’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8) 偏見(편견)을 허르시고 眞常(진상)과 眞樂(진락)과 眞我(진아)와 眞淨(진경)을 顯(현)히 니르시니라(下 22b)

‘A果 B果… -果乙’ 문형에서는 나열된 것 중 단 하나라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8)의 구문에서 밝혀 말하는 대상은 ‘眞常, 眞樂, 眞我, 眞淨’ 모두이지, 이들 중 어느 몇몇을 선택적으로 밝혀 이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8)에서의 접속조사는 ‘or’이 아닌 ‘and’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비록 『六祖法寶壇經諺解』에 (8)과 같은 구문이 위의 예문 하나 밖에는 없으나 이 구문에서 접속조사가 『大明律直解』에서와는 다르게 ‘and’의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2.5 ‘A果 B果… -果 等’ 문형과 ‘A와/과 B와/과… -들’ 문형

우리는 ‘2. 3’과 ‘2. 4’에서 ‘果’가 구문에 연속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or’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A果 B果… -果 等’ 문형에서도 ‘果’의 의미는 ‘or’이 된다.

(9) 가. 父矣 兄弟在 伯叔父果 伯叔妻在 母果 父矣 同生妹在 姑果 吾矣
兄果 長妹果 母矣父母果 夫果 等乙 謀殺爲行臥乎 事(1:4b)

(아버지의 형제인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의 아내인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동생 누이인 고모나 나의 형 또는 만누이*이거나* 어머니의 부모인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또는 남편 등을 음모로써 살해한 일이다)

나. 祖父母果 伯叔父母果 夫矣 姊妹果 兄果 長妹果 等矣 服制內 嫁娶爲在乙良(6:4b)

(조부모 또는 백숙부모 또는 남편의 자매*이거나* 형제 또는 만누이 등의 초상 중에 시집장가든 경우에는)

이들 구문에서 특정된 행위(살해, 혼인)는 나열된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라도 특정된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된다. 반드시 열거된 모든 사람의 경우 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서술에 있어 대상(내용)이 되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의 문형에 대응되는 문형이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도 찾아진다. 다만 ‘等’은 『大明律直解』와는 달리 한자어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말 ‘들’로 바꾸어 접속조사 없이 홀로 썼다.⁸⁾

- (10) 師(스) | 홀른 門人法海(문신법해)와 志誠(지성)과 法達(법달)와 神會(신회)와 智常(지상)과 智通(지통)과 志徹(지철)와 志道(지도)와 法珍(법진)과 法如(법여)들 홀 불러 니르샤다(下 41a~41b)

위의 구문 역시 (9)와 마찬가지로 나열된 자들은 서술에 있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10)의 구문은 불러서 이르는 행위에 있어서의 대상을 모두 나열해 보이는 것이므로 접속조사는 ‘or’이 아닌 ‘and’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A와/과 B와/과… -들’ 문형이 비록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 한 번 보이지만 우리는 접속조사의 쓰임상 의미가 『大明律直解』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⁹⁾

2. 6 ‘-矣 -果’ 문형과 ‘-의 -와/과’ 문형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 소유격조사 ‘矣’가 쓰인 접속조사 구문을 볼 수 있다. 이 구문은 ‘-矣 -果’ 문형을 지니는데 이의 구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가. 他人矣 一齒果 手足 一指乙 折斷爲弥(20:1b~2a)

8) (10)의 구문에 대한 원문을 보면 ‘들’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 ‘等’을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師一日喚門人法海志誠法達神會智常智通志徹志道法珍法如等曰

9) 『大明律直解』에서는 ‘A果 B果… -果 等’ 문형이더라도 ‘果’가 ‘and’의 의미인 경우도 있었다.

(i) 卽時皮果鬚果尾果等乙納官齊(16:1b)

(즉시 가죽과 갈기와 꼬리 등을 관사에 들이며)

(ii) 牛乙良力果角果皮果等乙納官齊(16:1b)

(소이면 힘줄과 뿔과 가죽 등을 관사에 들이고)

졸저(2006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의 구문은 어떠한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열거되는 것들은 모두 그 행위에 있어 예의 없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시문인 이들 구문에서의 ‘果’는 ‘and’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문이 쓰이지 않았다.

- (타인의 치아 한 개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며)
 나. 家長矣 期親果 外祖父母乙 犯打爲在乙良(20:10a)
 (가장의 기복친 또는 외조부모를 구타한 경우에는)
 다. 妻妾亦 夫矣 祖父母果 父母乙 犯打爲在乙良(20:14a)
 (아내나 첩이 남편의 조부모 또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구타한 것은)
 라. 姊妹矣 夫果 妻矣 甥乙 毆打爲弥(20:15b)
 (자매의 남편 또는 아내의 오라비를 구타하며)

그런데 이들 구문에서 접속조사 ‘果’는 내용상 ‘and’가 아닌 ‘or’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줄고(2006ㄱ)에서 밝혔듯이 만일 ‘果’를 ‘and’의 의미로 써 해석하게 되면 열거된 행위 모두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게 된다. 그러나 이 구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果’는 ‘or’의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상 목적격조사 ‘矣’가 쓰여야 함에도 쓰이지 않은 다음의 접속조사 구문에서는 ‘果’가 ‘and’의 의미를 가진다. 아래 구문에서 내용상 ‘矣’가 들어갈 자리는 ‘矣’로 표시하였다.

- (12) 가. 軍情緊急(矣) 事果 及 前期良中 無馬乙 因于 使行走死爲在乙良 不坐罪(17:5a)
 (군사 정황상 긴급 일과 먼지의 역에 말이 없으므로 인하여 계속 말을 달려 죽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 民間(矣) 婦女果 及 老病人 等戈只 功錢給爲遣(17:7a)
 (민간 부녀와 늙은이 그리고 병든 사람 등에게 품삯을 주고)
 다. 合於死爲在 十惡(矣) 罪囚果 及 強盜乙良 必于 無時決斷爲乎喻乃(28:19a)
 (죽여 합당한 십악 죄인과 강도는 비록 아무 때나 형벌을 집행할 수 있으나)
 라. 凡 全委造作(矣) 繕工寺果 供造署 等 次知爲頭 匠人等亦 造作入用物色等乙 斜用爲在乙良(29:2b)
 (무릇 영조를 전담하는 선공사와 공조서 등에서 담당 우두머리 되는 장인들이 물품을 많이 파손시켜 이를 마음대로 자기 용도에 충당한 경우에는)

따라서 소유격조사 ‘矣’는 접속조사 ‘果’를 ‘or’의 의미로 해석하라는 일중

의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어떠한가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예문은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 찾아지는 ‘-의 -와/과’의 문형이다. 이 문형은 (11)의 ‘-矣 -果’ 문형과 동일한 문형이다.

(13) 가. 五祖(오조)의 懷(회)와 會(회)에 止(지)하며(中 51b~52a)

나. 옛데 外道(외도)의 斷(단)과 常(상)과 邪見(사견)을 比(비)화(中 88a)

다. 凡夫(범부)의 四倒(스도)와 二乘(시승)의 四倒(스도)와 모드면 八倒(팔도) | 라(下 22a)

그런데 (13가)는 지명에 ‘懷’ 자가 쓰인 곳이거나 ‘會’ 자가 쓰인 곳은 모두 머물라는 것이지 둘 중 어느 한 곳은 지나치고 어떤 한 곳은 머물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13나)도 배운 것이 ‘斷’, ‘常’, ‘邪見’ 모두이지,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적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다. (13다)는 ‘八倒’에 대한 말이므로 ‘凡夫의 四倒’와 ‘二乘의 四倒’를 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13)에서의 접속조사 ‘와/과’는 ‘or’의 의미가 아닌 ‘and’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격조사가 쓰인 접속조사 구문에 있어서 접속조사의 의미는 『大明律直解』와 『六祖法寶壇經諺解』 간에 서로 달랐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¹⁰⁾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도 ‘와/과’가 ‘또는’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구문이 그 예이다. 즉, 아래 (14가)와 (14나)를 서로 의미가 상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0) 『大明律直解』에서는 ‘果’를 ‘or’로 풀이하도록 표지하는 역할을 ‘矣’ 외에 ‘乙’과 더불어 쓴 ‘果’에서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果乙’이 쓰인 이들 구문에서 ‘果’는 내용상 모두 ‘or’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2006-) 참고.

(i) 官果 吏果乙 差等以 遞減科斷爲臥乎等用良(1:35b)

(관료 또는 아전을 등급으로써 차례로 덜어 차별하는 바로써)

(ii) 之次爲在 官員果 郎廳果乙 犯打爲在乙良(20:6a)

(보좌관 또는 낭청관을 때렸을 경우에는)

(iii) 凡 族下亦 同姓 及 異姓 總麻兄果 姊果乙 犯打爲在乙良(20:12a)

(무릇 손아래 사람이 같은 성씨 및 다른 성씨의 시마복 친족의 형 또는 누이를 때렸을 경우에는)

(iv) 三寸 伯叔父果 父之姊妹亦 姪果 姪孫果乙 毆殺爲弥(20:13b)

(삼촌인 백·숙부나 고모가 조카 또는 종손을 때려 숨지게 하며)

(v) 凡 子孫亦 祖父母果 父母果乙 犯打爲弥(20:14a)

(무릇 자손이 조부모 또는 부모를 구타하며)

그러나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접속조사와 목적격조사가 더불어 쓰인 ‘와/과’는 쓰이지 않아 위의 예문과 같은 구문은 쓰이지 않았다.

- (14) 가. 노인과 어린이가 버스에 타면 학생과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
 나. 노인 또는 어린이가 버스에 타면 학생 또는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

그러나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14가)는 (14나)가 아니다. 먼저, (14가)의 ‘노인과 어린이가 버스에 타면’을 보면 버스에 탑승한 사람은 노인과 어린이 두 명이다.

- (15) 버스 탑승자={노인, 어린이}

그러나 (14나)의 ‘노인 또는 어린이가 버스에 타면’에서는 버스 탑승자는 한 명이다. 즉, 노인이거나 어린이 둘 중에 한 명이다.

- (16) 버스 탑승자={노인} 또는 버스 탑승자={어린이}

여기서 버스 탑승자를 ‘B(Bus)’라 하고, 노인을 ‘E(Elderly)’, 어린이는 ‘C(Child)’로 한다면 위의 (15)와 (16)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 (17) 가. $B = E \wedge C$
 나. $B = E \vee C$

이때 (17가)와 (17나)의 ‘B’에서 (17나)의 ‘B’를 ‘B’로 하면 (17가)와 (17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8) $B = E \wedge C$ 이고 $B = E \vee C$ 이므로 $B \neq B'$

다음은 ‘학생과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와 ‘학생 또는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를 분석해보기로 한다.¹¹⁾ 우선, ‘학생과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를 보면 이 구문은 버스에 학생과 젊은이가 탑승해 있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이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리 또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생’을 ‘S(Student)’, ‘젊은이’를 ‘Y(Youth)’로 하고 ‘버스탑승’을 ‘R(Ride)’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공식이 성립된다.

11) 이 논의에서 자신이 일어나기 싫어서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9) $S \wedge Y \gg R$

그리고 이들의 버스탑승은 필연적이어야 한다.

(20) $\square R$

그러나 ‘학생 또는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에서는 ‘학생’과 ‘젊은이’는 반드시 버스에 탑승해 있을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구문은 ‘만일에 버스에 탑승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는 ‘학생’ 또는 ‘젊은이’가 버스에 탑승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버스탑승에 대한 공식은 (20)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된다.

(21) $\diamond R$

그러므로 이들의 자리 양보는 만일에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로 한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보’를 ‘C(Concession)’로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세울 수 있다.

(22) $R \rightarrow C \vee \sim(R \rightarrow C)$

따라서 ‘학생’이건 ‘젊은이’건 간에 자리의 양보는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에 한정된다. 만일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자리의 양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과 ‘젊은이’의 자리양보는 이와 같은 조건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리양보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 된다.

(23) 가. $S \parallel - R \rightarrow C \vee \sim(R \rightarrow C)$

나. $Y \parallel - R \rightarrow C \vee \sim(R \rightarrow C)$

그렇기 때문에 (14나)의 구문에서는 자리양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과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에서는 자리 양보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자리 양보자는 ‘학생’과 ‘젊은이’ 두 사람이 된다. 즉, 두 개의 자리가 양보된다. 그러므로 이의 공식은 (23)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된다.

(24) $\square C = \{S, Y\}$

한편, (14나)에서 버스의 탑승자는 ‘학생’이거나 ‘젊은이’ 둘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둘 다가 된다. 혹은 둘 다 탑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 또는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에서의 탑승자는 다음과 같다.

$$(25) 2^R$$

그러나 (14가)의 ‘학생과 젊은이는 자리를 양보한다’에서는 ‘학생’과 ‘젊은이’ 모두 탑승해 있어야 한다. 이는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26) \square R = (S, Y)$$

그리고 (14가)의 구문에서는 ‘학생과 젊은이 둘 다 탑승’이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역시 이를 공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7) B+>R = (S, Y)$$

따라서 (14가)와 (14나)의 구문을 공식으로 분석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8) \text{가. } B = E \wedge C, S \wedge Y \gg R, \square R, \square C = (S, Y), \square R = (S, Y), B+>R = (S, Y), B+>R = (S, Y)$$

$$\text{나. } B = E \vee C, \diamond R, R \rightarrow C \vee \sim(R \rightarrow C), S \parallel - R \rightarrow C \vee \sim(R \rightarrow C), Y \parallel - R \rightarrow C \vee \sim(R \rightarrow C), 2^R$$

위 (28)에서 ‘가’는 (14가)에 대한 공식이고, ‘나’는 (14나)에 대한 공식이다. 따라서 (14가)와 (14나)는 의미적으로 전혀 다른 구문이 된다. 그러므로 (14가)와 (14나)를 서로 같은 구문인 것으로 느끼는 경우는 위 (28가)와 (28나)의 공식 중 어느 것을 서로 혼동하거나 바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B = E \wedge C$ 를 $B = E \vee C$ 로 정의한다든지, $\square R$ 을 $\diamond R$ 로 한다든지, $B+>R = (S, Y)$ 를 2^R 로 바꾸어 생각한다든지 등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분석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주7’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상황이나 공동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14가)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학생과 젊은이의 버스 승차는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상황이고, 학생과 젊은이의 자리 양보는 둘 다 해야 하

는 공동행위이다. 그러나 (14나)에서는 각각 별개의 상황과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간과하여 (14가)를 (14나)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음 문장의 경우도 그러하다. 아래 문장에서 ‘와/과’를 ‘or’의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

(29) 그들 세 여자는 각각 죄수와 바보와 거지와 결혼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지 이를 공식으로써 확인해보기로 한다. 먼저 (29) 구문에서 세 여자는 모두 존재하는 인물로서 반드시 3명이어야 한다. ‘존재’를 ‘E(Existence)’로 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30) $\square 3E$

그런데 이들이 모두 결혼했다. 두 명 이상의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이상 이들 여인은 각각 한 명의 남성과 결혼했다. 따라서 이들 세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명의 남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29)에서는 여자와 동수의 남성이 있음이 전제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자’를 ‘F(Female)’라 하고 ‘사람’을 ‘P(Person)’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공식화 된다.

(31) $F=F(P_1, P_2, P_3)$

여기서 사람은 반드시 3명이어야 하므로 이는 다음과 같다.

(32) $\square 3P$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된다.

(33) $F \rightarrow \square 3P$

이때 여인 세 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이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34) \square 3P \rightarrow \square 3E$$

그리고 ‘결혼’을 ‘W(Wedding)’로 하면 세 여인이 치룬 각각의 결혼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 된다.

$$(35) F(P_1, P_2, P_3) = F(W_1, W_2, W_3)$$

따라서 이들 세 여인의 결혼에는 반드시 세 명의 상대방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36) F(W_1, W_2, W_3) \gg \square 3P$$

그리고 이들 여인의 상대방인 남성 세 명은 각각 ‘죄수’, ‘바보’, ‘거지’이므로 ‘남성’을 ‘M(Man)’, ‘죄수’를 ‘C(Convict)’, ‘바보’를 ‘S(Stupid)’ ‘거지’를 ‘B(Beggar)’로 한다면 이들 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37) M(C, S, B)$$

그리고 이들과 결혼한 여인은 세 명이므로 여기서의 남성이라는 말에는 자연 세 명의 남성이라는 내용이 함축된다.

$$(38) M \gg \square 3P$$

여기서 ‘M’은 ‘M(C, S, B)’이므로 (38)은 아래와 같이 된다.

$$(39) M(C, S, B) \gg \square 3P$$

따라서 세 여인과 결혼한 ‘죄수’, ‘바보’, ‘거지’는 각자 모두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9)의 구문은 세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가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0) F = \square 3P \rightarrow M = \square 3P$$

여기서 결혼하는 서로의 쌍은 정해져 있다. 즉, 세 명의 여인을 각각 ‘P_i,

P₂, P₃’라고 하면 이들의 혼인쌍은 다음과 같다.

(41) P₁:C, P₂:S, P₃:B

그러나 ‘와/과’를 ‘or’의 의미로 하게 된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 경우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 여인의 결혼이 있었다는 것 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때는 한 여인이 결혼한 상대 남성은 ‘죄수’, ‘바보’, ‘거지’ 중 어느 한 명이라는 것만을 알 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42) P₁(C, S, B), P₂(C, S, B), P₃(C, S, B)

그리고 ‘와/과’를 ‘or’로 했을 경우이 이 구문은 결혼하는 여인이 이들 남성 중 어느 한 명과 결혼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문상 남성 3명이 모두 같이 존재해 있어야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구문에서 혼인에 있어 요구하는 남성은 세 명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구문상 존재해야 할 남성은 한 명뿐이다. 따라서 이의 공식은 (39)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된다.

(43) M(C, S, B) ≫ □1P

이를 정리하여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공식에서 ‘와/과’를 ‘and’의 의미로 본 것은 ‘가’이고 ‘or’의 의미로 본 것은 ‘나’이다.

(44) 가. $F=F(P_1, P_2, P_3), \square 3P \rightarrow \square 3E, F(P_1, P_2, P_3)=F(W_1, W_2, W_3),$
 $F(W_1, W_2, W_3) \gg \square 3P, M(C, S, B), F=\square 3P \rightarrow M=\square 3P, P_1:C,$
 $P_2:S, P_3:B$

나. $F=F(P_1, P_2, P_3), \square 3P \rightarrow \square 3E, F(P_1, P_2, P_3)=F(W_1, W_2, W_3),$
 $P_1(C, S, B), P_2(C, S, B), P_3(C, S, B), M(C, S, B) \gg \square 1P$

이처럼 두 개의 구문은 공식상 서로 다르게 분석되는 구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29)의 구문에서 ‘그들 세 여자는 각각 죄수와 바보와 거지와 결혼했다’와 ‘그들 세 여자는 각각 죄수 또는 바보 또는 거지와 결혼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구문이 된다.

3. 마무리

『大明律直解』에서는 접속조사 ‘果’가 문형에 따라 ‘and’ 또는 ‘or’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여기서 ‘or’의 의미는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와/과’에는 없는 의미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문형에 의해 접속조사의 의미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14세기 말엽의 국어 모습을 보이는 『大明律直解』에서는 문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으므로 우리는 이를 통하여 그 당시 국어에 있어서 접속조사의 용법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에는 없는 이러한 용법이 15세기 말엽에는 어떠한지 문제가 된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우리는 지금까지 『大明律直解』와 『六祖法寶壇經諺解』를 상호 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大明律直解	六祖法寶壇經諺解	현대국어	의 미		
			大明律直解	六祖法寶壇經諺解	현대국어
‘-果 -亦’	‘-와/과 - 이’	‘-와/과 -이/가’	and	and	and
‘-果 -乙’	‘-와/과 - 을’	‘-와/과 -을/를’	and	and	and
‘A果 B果… -亦’	‘A와/과 B와/과 … -이’	‘A와/과 B와/과 … -이/가’	or	and	and
‘A果 B果… -果乙’	‘A와/과 B와/과 … -을’	‘A와/과 B와/과 … -을/를’	or	and	and
‘A果 B果… -果 等’	‘A와/과 B와/과 … -들’	‘A와/과 B와/과 … -들’	or	and	and
‘-矣 -果’	‘-의 -와/과’	‘-의 -와/과’	or	and	and
‘-果 -果乙’			or	×	×

우리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문형에 상관없이

접속조사는 무조건 ‘and’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상 용법은 현대국어와 동일하다는 것도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접속조사에서 ‘or’의 의미는 적어도 『六祖法寶壇經諺解』가 쓰인 15세기 말엽에는 진즉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5세기 말엽에 이미 접속조사의 의미상 용법이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접속조사에 대한 의미상 용법은 14세기 말에 쇠퇴하였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¹²⁾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大明律直解』와 『六祖法寶壇經諺解』로 국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우리의 결론을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른 자료에 의해서 정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후의 작업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접속조사의 의미상 용법이 적어도 『六祖法寶壇經諺解』의 시기에는 『大明律直解』와는 달랐을 것을 상정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고정의. (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두황. (1994). 조선조 초기의 이두 연구-“대명률직해”와 “양잠경험촬요”를 중심으로-. 경기대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박성종. (1996). 조선 초기 이두 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철주. (2003). 대명률직해의 구문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박철주. (2005). 대명률직해의 처격 및 구격 조사에 대한 고찰. *한글*, 269, 한글학회, 5-51.
- 박철주. (2006)ㄱ.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간의 조사 ‘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33-58.
- 박철주. (2006)ㄴ. 대명률직해 구문의 형식에 대한 연구-소지, 사용, 말소, 빙자, 공납 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271, 한글학회, 5-26.

12) 물론 이러한 결론은 오직 『大明律直解』와 『六祖法寶壇經諺解』 두 자료에 한한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가 그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 국한된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미약하나마 그 당시의 언어를 투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박철주. (2006)ㄷ. 대명률직해의 구문과 현대국어의 구문간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조사 ‘乙’을 중심으로-. 한글, 273, 한글학회, 49-72.
- 박철주. (2006)ㄹ.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不得’과 ‘安徐’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18집, 우리말학회, 57-86.
- 박철주. (2006)ㄱ.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及’의 의미. *언어과학연구*, 제38집, 언어과학회, 23-42.
- 박철주. (2006)ㄴ. 대명률직해의 구문 표현과 현대국어의 구문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 *609돌 세종날 기념 한글학회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발표 논문*, 주최: 한글학회(2006. 5. 13), 83-97.
- 박희숙. (1985).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한상인. (1993). 대명률직해 이두의 어학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철주

403-020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우성4차 아파트 404동 905호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10-4011-7896, 011-448-7896

이메일: sunvim@unitel.co.kr

Received: 30 March, 2008

Revised: 30 May, 2008

Accepted: 10 June, 2008